

2024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·한국콘텐츠진흥원·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지역 특화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「2024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목적

- 제주특화 소재(설화, 문화, 역사, 자연 등 기반)를 활용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, 제주도 문화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
- ‘제주’를 테스트베드로 삼아, 개발 후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장성 높은 지역특화콘텐츠 발굴

2. 사업개요

- 사업명: 2024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
- 사업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4. 10. 31.
- 공고기간: 2024. 3. 7.(목) ~ 2024. 3. 29.(금) 18:00까지(23일간)
- 지원대상: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 기업(필요시 컨소시엄(주관1, 참여1) 구성 가능)
 - ※ 제주지역 외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(단, 비영리법인, 부동산,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)
 - ※ 예산편성시 주관기업의 비중이 **최소 60% 이상**이어야 함
- 공모방식: 자유공모(기업별로 총 1개 과제만 지원 가능)
 - ※ 주관기업, 참여기업에 관계없이 1개 과제만 지원 가능
- 지원분야

구분	지원분야
제주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게임, 공연, 음악, 실감콘텐츠(VR, AR, XR, MR, 프로젝션맵핑, 홀로그램 등), 교육콘텐츠(단순교구 제외), 관광콘텐츠(어플리케이션 포함) 등 문화콘텐츠 전 장르※ 단, 영화, 애니메이션 제외※ 실감콘텐츠 장르(VR, AR, MR, XR, 스크린(다면사) 등의 영화, 애니메이션은 지원 가능

3. 세부 지원내용

- 중점방향 및 사항
 - 제주특화 소재를 활용한 확장성 높은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
 - 제주를 테스트베드 및 실증공간으로 활용하여, 타 지역으로 진출가능한 콘텐츠 확보
- 과제별 지원내용
 - 지원방향: 제주특화 소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

- 지역특화성: 지역(행정구역, 문화권)의 전통적,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지역의 특화된 문화·생태·시설/인프라·관광자원·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(제작)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
- 지원분야: 게임, 공연, 음악, 전시, 실감형콘텐츠(VR, AR, XR, MR, 프로젝션맵핑, 홀로그램 등), 교육콘텐츠(단순교구 제외), 관광콘텐츠(어플리케이션 포함) 등 문화콘텐츠 전 장르
- ※ 단, 영화, 애니메이션은 지원 불가
- ※ 실감콘텐츠 장르(VR, AR, MR, XR, 스크린X(다면시사) 등)의 영화, 애니메이션은 지원 가능
- 지원규모: 과제당 1.6억원(총 3개 과제 선정)

지원금	사업자부담금(자부담)	지원규모
과제당 160,000천원 ※ 선정평가 최우수(1등) 과제에 한해 4,000만원 추가 지원	총사업비의 10% 이상	3개 과제

- 기타 지원사항
 - ①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내 <BeIN;(블랙박스공연장)>공연장 무상 지원
 - ※ 지원기간(협약일~24.10.31.) 이내에만 무상 지원하며, 스케줄은 선정 후 별도 협의 필수
 - ※ 공연, 전시 콘텐츠에 한해서 지원하며, 기존 공연 등 일정에 따라 원하는 기간에 대관이 어려울 수 있음
 - ② 결과평가 우수판정시 차년도에 사업화지원(마켓참여, 홍보, 쇼케이스 등) 추가지원

○ 필수요건

- 제주지역 특화소재 콘텐츠 개발 1식
-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1건 필수
- 과제당 3명 이상의 신규채용 필수(정규직 1명, 비정규직 2명)
 - ※ 채용인정 기준
 - 정규직: 협약일 이후로 3개월 내에 채용필수, 고용필수(5개월 이상 고용유지 의무)
 - 비정규직: 근로계약시 3개월 이상 고용 필수
 - * 필수 고용기간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대체채용을 실시해야 함
 - * 대체채용자의 경우 기존 채용인원과 고용기간을 합산하여 필수 고용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함
- 완성된 콘텐츠 및 홍보 등에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콘텐츠진흥원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및 로고 명기

4. 지원자격 및 지원조건

○ 지원자격

-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지사(별도 사업자등록번호 필수)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제주지역에 해당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‘문화산업’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(법인)
-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·제작 전문인력을 보유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(법인)
- 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지역 외 기업(법인)과의 컨소시엄 가능
 - ※ 최대 2개 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
 - ※ 참여기관으로 대기업 참가 가능(단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, 총사업비(지원금+자부담) 기준으로 현금 자부담 매칭 20% 이상, 유통판로확보서 의무 제출)
 - ※ 예산편성시 주관기업 비중이 최소 60% 이상이어야 함
 - ※ 내용이 다른 과제 수행계획서라도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중복지원이 발견될 경우에는 탈락 및 협약 해지(주관기관, 참여기관 모두 해당) 조치함
 - ※ 최근 3년(2021~23) 중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에 2회 이상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
<문화산업진흥기본법> 제2조 제1항

“문화산업”이란 문화상품의 기획, 개발, 제작, 생산, 유통,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
- 가. 영화·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- 나. 음악·게임과 관련된 산업
- 다. 출판·인쇄·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- 마.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
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 제외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- 아. 대중문화예술산업
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
(다만,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)
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
지원 제외 및 참가자격 제한대상

-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
-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

[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]

-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
- 당해연도 동시 수행가능한 과제 2개 제한(5,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)
- 3개년 수행 및 신청 금액 25억 초과 제한

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로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- 주관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
-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
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지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
-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
-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 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),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는 경우
-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
- 신청일 기준으로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및 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사업 참여 신청자(기업)의 경영 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 - 가.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재제중이거나 재제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 - 나. 법정관리·회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(개인 회생·파산절차 진행 중인자, 면책권자 포함)
 - 다.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, 부적정’인 경우
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E나라도움 접수 기간: 2024. 3. 7.(목) ~ 2024. 3. 29.(금)(23일간)
 - ※ 최종선정 개수 미만 접수 시, 공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- 신청서 방문제출 기간: 2024. 3. 28.(목) ~ 2024. 3. 29.(금) 18:00까지
 - ※ 평일 근무시간 중 접수(점심시간 제외),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
 - ※ 근무시간 : 09:00~18:00 / 점심시간 : 12:00~13:00

▶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 내에만 제출 가능하며, 마감시한까지 E나라도움에 신청완료가 안 될 경우에는 방문 접수 불가

※ E나라도움을 통한 제출 및 오프라인 제출을 반드시 모두 해야 함

▶ 마감 당일 많은 과제 접수가 진행될 경우 업로드 지연 등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, 가급적 마감기한 1일 전 사업신청서 제출 완료를 권장함

- 신청방법: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후, 신청서 출력하여 방문 제출(모두 필수)

① 온라인 접수(e나라도움)

-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 접속 후, 회원가입
- [사업수행관리-신청관리-사업신청관리-공모현황]에서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정
- 공모기관에 재)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정 후 [검색]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
- 공모목록에서 “2024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” 버튼 클릭
-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, 오른쪽 위에 [신청서작성] 버튼 클릭
- [사업기본정보], [수행기관정보], [재원조달계획], [자격요건확인], [파일첨부] 탭 순서로 작성
- 제출폴더양식.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,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
- ※ MacOS에서 압축할 시 파일 깨짐 현상이 발생하오니 확인 후 업로드
-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[신청서제출] 탭의 [신청서제출]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
- ※ 모든 지원사업은 [한국재정정보원]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,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.

② 오프라인 접수(신청서 방문제출)

-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,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사무용 집게로 철하여 제출
- 각 제출서류 및 기타 시청각 참고자료 등을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USB로 제출
-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·삭제·대체될 수 없음
- ※ 제출일시 : 2024. 03. 28.(목) ~ 03. 29.(금) 18:00까지(점심시간(12~13시) 제외)
- ※ 제출장소 :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2층 문화산업팀 (제주시 신산로 82)
- ※ 제출방법 :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, 방문접수(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)
 - 온라인 접수(e나라도움 과제 접수)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능

- 제출서류: 과제신청서 포함 총 12개 (필수제출 기준)

구분	제출서류	제출형식	유의사항
1	과제신청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HWP(원본) • PDF(날인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표지를 제외하고 20페이지 이내로 작성
2	수행기관 소개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HWP(원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
3	정부지원 수혜실적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
4	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사업비 산출내역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
5	위탁사업 계획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당시(위탁사업비 편성 시)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
6	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/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, 방문 시 원본 제출
7	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EXCEL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 기관별 지정양식에 대표자,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

	참여인력 이력		• 각 기관별 지정양식에 대표자,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 에 대하여 작성 *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
	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	• HWP(원본)	
	신규인력 채용계획		
8	사업자부담금 약약서	• PDF(날인본)	• 지정양식에 작성,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제출, 방문 시 원본 제출
9	유사과제 및 제재정보 확인서	• PDF 또는 JPG	• 각 기관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
10	개인정보 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	• PDF(날인본)	•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, 방문 시 원본 제출 •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
11	재무제표(최근2년)	• PDF	• 최근2년(2022,2023년) 재무제표 ※ 22년도 미결산시, 2022년도만 제출 (추후 23년도분을 제출해야 하며, 참여배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)
12	사업자등록증 사본		• 각 기관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※ 유효기간 확인 필수
13	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		
14	4대보험 완납 증명서		
15	우대가점 관련 증빙서류	• PDF	• 입주기업확인서(각 입주공간(시설)에 요청하여 발급)
16	평가위원 추천표	• PDF(날인본)	• 붙임2. 제출양식 내 추천표 양식 작성 및 제출

- 선정 후 제출서류: **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고**

○ 접수 및 문의처

- 사업 관련 문의: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

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김하섭 책임	064)735-0618	allmore@ofjeju.kr

- e나라도움 관련 문의: ☎ Tel : 1670-9595 / 홈페이지 : <https://www.gosims.go.kr/>

6. 선정평가 및 평가기준

○ 선정기준

- 서면검토: 서면검토로 적부판정 후, 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 부여
- 발표평가: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※ 평균점수 동일 시, 우대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며, 제외점 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사업성 항목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
 - ※ 평균점수(우대가점 포함)가 60점 미만인 기업은 탈락처리 함
- 우선협상대상 선정: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※ 우선협상대상자(기업)에게는 과제 선정평가 결과 및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보완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며, 과제 검토후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
 - ※ 우선협상대상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, 후순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

○ 평가방법

- 심의위원회(5인 이내)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 선정
- 발표시간: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(15분 발표, 15분 질의응답)
- 발표자: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 책임자(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 과제 책임자)
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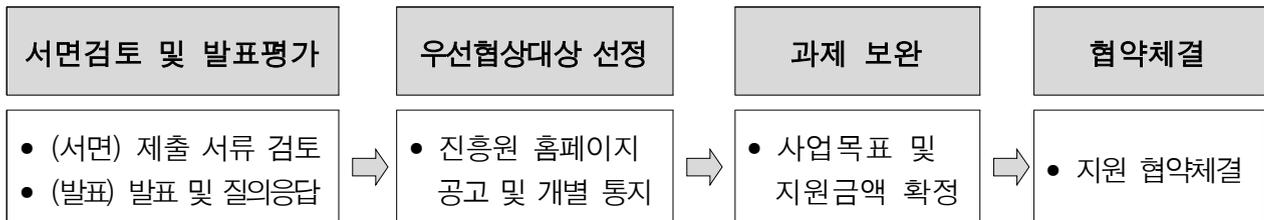
구분지표	세부지표	내용	배점					
안정성 및 전문성 (30점)	기업 안정성 및 인력의 전문성	유사과제 수행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 여부	30					
		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여부						
		참여인력 편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						
과제 우수성 (25점)	소재의 부합성	소재의 적절성(제주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)	25					
	계획의 우수성	계획 및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구체성						
	목표의 명확성	제시된 목표(성과)에 대한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						
사업성 (40점)	사업화 계획 완성도	개발 후 사업화 계획의 전문성 및 안정성	40					
	사업화 가능성	상용화(사업화) 이후 발전가능성 및 지속성						
ESG (5점)	고용계획의 우수성	해당 과제를 통해 발생할 일자리의 정량적 우수성	3					
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채용인원</td> <td>5명 이상</td> <td>4명</td> <td>3명</td> </tr> <tr> <td>부여점수</td> <td>3점</td> <td>2점</td> <td>1점</td> </tr> </table>		채용인원	5명 이상	4명	3명	부여점수
채용인원	5명 이상	4명	3명					
부여점수	3점	2점	1점					
	지역기업 여부	주관기관(기업)의 지역기업 여부(본사 소재지 기준) * 본사가 제주에 있는 경우(2점) / 지사가 제주에 있는 경우(1점)	2					
합 계			100					

【우대가점】

우대가점 부여대상

- <제주콘텐츠코리아랩>, <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> 입주기업 (2점)
※ 주관, 참여기업 모두 해당되며 해당 우대가점은 과제당 최대 2점 부여
- 인증사회적기업(예비포함)(1점) / 여성기업(1점)
- 사업기간(협약일~24.10.31.) 내에 개발완료 후, (재)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<BeIN:> 공연장에서 시연가능한 공연, 전시 콘텐츠(1점)
※ 공연, 전시 외 콘텐츠는 가점 부여X

○ 평가 및 협약절차



※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진흥원에서 지정한 전문가를 통한 과제(사업화)컨설팅이 지원되며, 우선협상대상 기업은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보완을 진행할 의무가 있음

7. 지원금 지급 및 절차

○ 지원금 지급 관련: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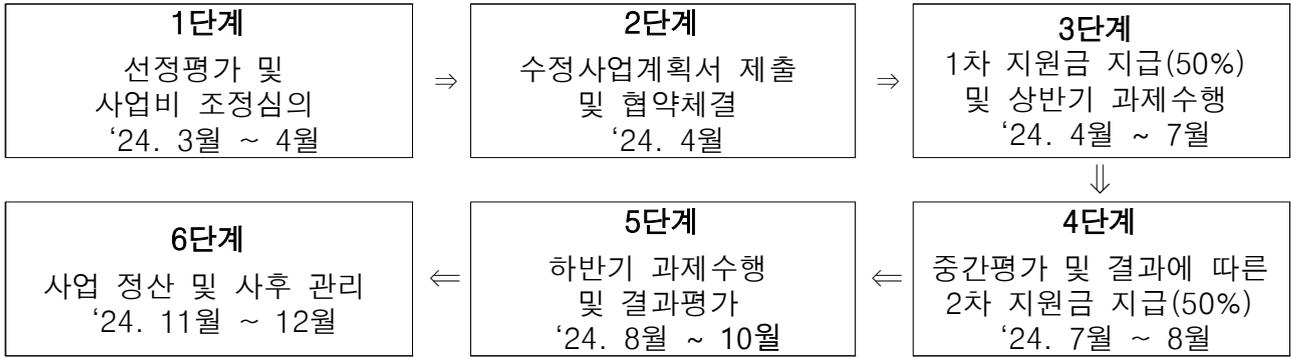
- 1차 지원금: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(50%)
- 2차 지원금: 중간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2차 지원금 지급(50%)

※ 회차별 지원금 지급 비율은 예산교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구분	중간평가 점수	2차 지원금 지급	비고
합격	60점 이상	2차 지원금(50%) 지급	과제 지속수행
불량	60점 미만	과제실패 및 탈락	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

- 사업비 반영 단위사항: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(사업비 신청기준) 참고
- 사업자부담금(기업부담금)선 집행 필수
 - 주관기관은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,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,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

○ 지원금 신청절차



○ 사업자부담금 관련 사항

- 총 협약사업비(지원금+사업자부담금)의 10% 이상 사업자부담금 현금 편성 필수
- 사업자부담금 선집행 준수 원칙을 고려해 예산집행 계획 수립

<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>

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○ 정산내역 증빙자료: 세부내용은 [붙임1. 사업 안내서] 참조

- ※ 선정과제는 협약종료일(2024.10.31.)까지 콘텐츠 제작 및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고, 진흥원 지정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※ 선정과제는 협약종료일(2024.10.31.)로부터 진흥원 지정일까지 **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검증보고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**

8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기획재정부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한국콘텐츠진흥원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, 「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」, 「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」 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규칙,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, 수행기업의 책임으로 봄
 - ※ 공고에 미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령, 규정, 지침에 따른
- 제주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의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에 참여할 수 없음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
-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, 협약

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컨소시엄 신청 시 구성 기관 중 한 기관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 무효 및 선정 취소(신청자격 미달 등)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 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본 사업 협약 체결 이후에 협약 해지 또는 사업 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과제수행기관에 제재 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 조치 내용(수행기업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-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(계좌)으로 구분·관리하여야 함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
- 신청일 기준 국세, 지방세 및 4대보험 미납액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불가
- 과제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('18.3)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중간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 - ※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9조에 근거,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부과 및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됨
 - ※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('18.3):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
- 과제결과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콘텐츠진흥원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홍보·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행사 등에서 전시·시연될 수 있음
-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
- 모집공고 종료 시 선정평가를 위한 최소 과제건수(6건)가 모집되지 않을 경우, 연장공고를 실시 할 수 있음

2024년 3월 7일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